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	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		배포일시 2013. 5. 2(목) 총 3매(본문 2, 붙임 1)		
담당 부서 건설경제과	담당자 • 과장 김채규, 사무관 송제호, 주무관 이장욱 • ☎ (044)201-3504, 3509, 3510			
보 도 일 시	2013년 5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부실·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

### -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전문건설업 등록·처분 행정기관인 시·군·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는 '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,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\*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,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·불법 업체로 파악\*\*됨에 따른 것이다.

- \*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(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)
  - 수주액(종합·전문 합계, 조원) : 176.4('07) → 150.1('11)
  - 업체수(종합·전문 합계, 개사) : 56,878('07) → 56,617('13.3월), 전문 45,350개

\*\*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,600여개사(전체 대비 14.6%)

○ 부실·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,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,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○ 이에 사실상 폐이퍼 컴퍼니인 부실·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.

\* 종합건설업체는 기 실태조사를 실시('129월~'133월)하였으며, 조사대상 5,050개 업체 중 1,751개(34.6%)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청(시·도)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

□ 실태조사 대상은 '13년 주기적 신고 대상,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\*을 제외한 약 29,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.

\* 주기적 신고 대상(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·심사), 종합건설 겸업업체(실태조사 기실시), 일정 규모이상 업체(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·준설업종 60억원이상, 기타업종 20억이상), 난방(1·2·3층) 및 가스(2·3층)업종 제외

□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·처분관청인 시·군·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,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
\* 전문업종별 등록기준은 붙임 참조

□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\* 처분을 할 예정이다.

\*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미보완 시, 3년내 동일 등록기준 미달 시

□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·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,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*참 고**

**전문건설업종별 등록기준**

전문건설업종	기술능력	자본금 (억원)	시설·장비
실내건축공사업	건축기술자 2인	2	
토공사업	토목 등 2인	2	
미장·방수·조적공사업	토목, 건축 등 2인	2	
석공사업	토목, 건축 등 2인	2	
도장공사업	토목, 건축 등 2인	2	
비계, 구조물해체공사업	토목, 건축 등 2인	2	
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	토목, 건축, 기계 등 2인	2	
지붕판금·건축물조립공사업	토목, 건축, 기계 등 2인	2	
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	토목, 건축 2인	2	
기계설비공사업	건축, 기계 2인	2	
상·하수도설비공사업	토목, 기계 2인	2	
보링·그라우팅공사업	토목기술자 2인	2	
철도·궤도 공사업	토목 2인, 기계 1인, 전기 등 2인	(법인) 3 (개인) 6	모터카, 타이랩퍼, 트롤리 등
포장공사업	토목 등 3인	(법인) 3 (개인) 6	
수중공사업	잠수 1인, 토목·기계 1인	2	잠수설비, 스쿠버 장비 등
조경식재공사업	조경 2인	2	
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	조경 2인	2	
강구조물공사업	토목·건축·기계 등 4인	(법인) 3 (개인) 6	
철강재설치공사업	토목 2인, 건축 1인, 기계 2인	(법인) 10 (개인) 20	제작장, 현도장, 기중기, 전기용접기
삭도설치공사업	기계·토목·안전관리 등 5인	(법인) 3 (개인) 6	기중기, 전기용접기, 동력원차, 발전기
준설공사업	토목 3인, 기계 2인	(법인) 10 (개인) 20	준설선, 예선, 양카바지
승강기설치공사업	2인	2	
가스시설시공업제1종	가스 등 3인	2	내압시험설비, 누출 검지기 등
시설물유지관리업	토목·건축 4인	3	비파괴시험기, 부식 검사기 등

\*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자하는 자를 말함

\* 「건축법」 그 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의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·도안에 보유 필요